

주차 관리 규정

- 목 차 -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용어의 정의)
- 제4조 (주차장운영)
- 제5조 (주차요금)
- 제6조 (요금수납)
- 제8조 (주차장이용)
- 제9조 (준수사항)
- 제10조(주차출차의 제한)
- 제11조(사고의 신고의무)
- 제12조(손해배상)
- 제13조(면책사항)
- 제14조(기타)

부천테크노파크2단지 입주사대표회의
부천테크노파크2단지 입주사지원본부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과 이용자의 제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1) 무료주차란 입주사의 임직원(이하 입주사라 한다) 소유차량으로 분양 면적에 비례하여 무료주차로 지정된 차량의 주차를 말한다.
- 2) “월정주차”라 함은 입주사의 소유차량으로서 규정 제8조 제2항에 따라 월정 주차요금을 납부한 차량의 주차를 말한다.
- 3) 시간주차란 전1항 이외의 차량으로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주차장에 임시로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주차장운영)

1) 무료주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운영한다.

(1) 입주사에 무료주차로 배정된 차량에 한하여 무료주차 정기권을 발행한다.

(37.86평당 1대 배정) 75평 1칸에 2대, 상가 및 기숙사는 평수에 상관없이 1호실 당 무료 1대

총면적의 반올림 기준 : 37.86/2의 이상일 경우 1대 추가

(2) 주차권을 발급받은 차량이 교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무료주차스티커를 재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간주차는 전1항 이외의 차량으로서 주차 시간에 따라 소정의 주차료를 납부하고 주차장을 이용 하여야 한다.

2) 주차타워 옥상 전용유료주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운영한다.

(1) 옥상전용주차 차량은 지정된 장소(주차타워 옥상)에만 주차가능 함. 이외 타 장소(주차타워 지하부터~4층, 화물주차장, 고객주차장)에 주차하여 적발될 시에는 즉시 차량번호 삭제와 스티커를 회수초지하고, 다음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2) 지급된 스티커는 지정된 차량 운전석 왼쪽 아래 부분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미부착시에는 부정사용자로 간주)

(3) 차량번호가 다른 경우와 스티커 미부착인 경우 외부 사용자로 간주한다.

(4) 세부규칙 : 주차요금 : ₩40,000 (부가세포함/2개월분) 판매대수 : 105대 선착순 마감

(입주사당 4대 한정) 화물차량은 접수 불가. 장애우 차량 : 월정기 10,000원 할인

3) 월정주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운영한다.

(1)월정주차권은 입주사 당 1대씩 배정한다. [단, 월정기 총 주차 대수 범위 내에서 신청업체에 한하여 1대 추가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월정주차권의 주차료는 신청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환불하는 때에는 당해 월의 주차료는 공제한다.

(3)주차권은 주차장 수용능력에 따라 제한 발급될 수 있다.

(4)주차권은 입주사 대표의 날인을 받아 입주사지원본부에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 차량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서면 통보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4) 업체별 지정(석)주차 제도

출입이 빈번한 각 입주사의 대표이사 차량을 주차타워 지하층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업체별 지정(석) 주차에 대하여 무료주차 1대를 반납(예: 75평은 무료주차 2대 이나 지정석을 신청 사용할 경우 지정주차 1대로 사용할 수 있음) 하여야 만 무료주차 2대로 지정주차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5조(주차요금)

1)3조의 1항의 차량은 무료로 한다.

2)시간주차의 경우 최초60분 무료 (개정:2014.11.10) 이후 30분당 500원으로 한다.

(~~단, 입주사가 시간주차권(할인권)을 구입하여 활용 시 30분당 250원이며 차량1대 당4장(2시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폐지) (개정 : 2014년 11월 10일) (시행 : 2014년 11월 17일)

3)월정주차 월4만원, 옥상 전용 월2만원, 장애우 차량 : 월정주차 10,000원 할인

제6조(요금수납)

1)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에서 출차 할 때 납부한다.

2)무료주차, 월정주차, 옥상전용주차와 일일주차요금 관련된 주차요금은 지원본부에서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이용)

1)주차장을 출입 할 때는 주차안내원의 통제에 따라야한다.

2)주차하는 주차장 백색선 내의 지정된 장소에 하여야하며 관리상 주차 장소를 지정할 경우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3)주차장이용 시간은 24시간 개방한다. (단, 후문출입구는 22:00~07:00까지 폐쇄한다)

제8조(주차권 발급)

- 1)입주자는 무료주차에 해당되는 차량리스트에 입주사 대표의 날인을 받아 매월 25일까지 지원본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무료 주차권은 매월 변동 없이 사용한다)
- 2)분양면적에 따라 무료주차권을 배정하고 남은 면적은 무료주차권을 배정할 수 없다.
- 3)각 입주사 차량으로 무료, 월정기, 5층전용 차량의 경우 입주사지원본부에 차량번호를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한다.
- 4)차량번호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번호판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고 인식에 장애가 되는 장치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 5)시간주차에 해당되는 차량은 입차 시 차량번호인식으로 진입하고 출차 시는 주차시간에 따른 요금을 납부한다.

제9조(준수사항)

- 1)주차장 내에서는 표식,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10Km/h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추월해서는 안 된다.
- 2)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및 폭발성 위험물, 유해물질, 악취물 등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 3)차량에 귀중품 및 도난의 우려가 있는 물품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하차 시에는 차량문을 반드시 잠겨야 한다.
- 4)주차장내에서는 긴급한 사항 이외는 경적을 사용할 수 없다.
- 5)주차장내에서는 차량의 수리, 급유, 세차 등을 할 수 없으며 고장난 차량을 방치 할 수 없다.
- 6)기타 주차장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타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7)무인정산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 사용 시 주의사항.
차량번호인식 주차관제시스템은 차량번호를 촬영 인식하여 입.출차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주차관리와 보안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빠른 입.출차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아래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 2012년 03월 12일/시행 : 2012년 03월 15일)
 - (1)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면 진입하여야 한다.
 - (2)진입 시 앞차와 뒤차 와 거리를 1.5m이상 유지를 해야 한다.
 - (3)진입속도는 5km/h이하를 유지하시고 신호에 따라 진입하여야 한다.
 - (4)입주사 무료, 월정기, 옥상전용 차량의 차량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방문차량으로 간주하여 요금 정산한다.

(5)정기 및 옥상전용차량은 사용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 등록하지 않은 경우 일일요금으로 정산되오니 만료기간 내에 재연장하여야 한다.

(6)방문차량 또한 번호인식으로 입.출차 관리가 되며 CCTV로 차종까지 캡처되어 요금이 정산하므로 별도의 주차권발권이 필요 없다.

8)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

(1) 화물하역장 앞에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다.

(2) 화물 상하차가 끝나면 즉시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여야 한다.

(3) 화물차량용 주차장(화물하역장 앞과 중동대로 변 주차장)에는 1톤 이상의 화물차량과 9인승 이상의 승합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번호와 관계없이 밴형찌프 차량과 9인승 미만의 승합차량은 화물차량주차장에는 주차할 수 없고 주차타워를 이용하여야 한다.

단, 각 입주사에 3항에 해당하는 화물차량이 없는 입주사에 대하여 일반승용차로 제품을 납품 등을 하는 것이 명확하고 해당 입주사가 신청하는 경우에 1대씩 허용 할 수 있다.
개정 (개정 : 2006. 03. 01)

(4) 고객용 주차장은 우리 단지를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입주사 직원차량은 주차할 수 없다.

(5) 장애인용 주차장은 장애자를 위한 법정 주차장이오니 일반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며, 장애인용 차량은 장애인차량등록증을 반드시 앞면 유리에 부착하고 주차하여야 한다.

(6) 입주사 임직원의 모든 승용차량은 주차타워를 이용하여야 한다. 옥상주차증을 소지한 차량은 주차동 5층 지정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곳에는 주차 할 수 없다. (적발시 전용주차권 발권 불허)

(7) 주차구획선 내에 정확히 주차하시고, 전면주차를 하여야 한다.

(8) 정문출입구는 24시간 연중무휴로 개방한다.

(9) 후문출입구는 07:00부터 22:00까지만 개방하고, 이후 시간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보안상 폐쇄하오니 정문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10) 주차증은 운전석 앞 유리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미부착시 부정주차로 간주)

(11) 주차카드는 정해진 차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차량번호 및 주차증과 주차카드 번호가 다른 경우, 스티커 미부착인 경우 주차카드 불법 사용자로 간주한다.

(주차증 : 적색 - 화물차량, 청색 - 일반차량, 노란색 - 5층 전용차량)

(12) 부정주차로 3번 적발된 차량은 주차권을 회수하고, 해당차량은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는다.

9) 이륜차의 보관 :

(1)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입주사지원본부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 2006. 09. 01)

(2)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등은 광장에 진입하여 주행 및 주차할 수 없다.

10)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1)지원본부는 주차질서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경고스티커 부착하여 입주사에 위반사실 통지 및 위반사실 사진 게시판에 게시하고, 단지 내 출입제한 및 퇴거 조치 등 과 차량견인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지원본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위반차량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당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2006. 09. 01)

11)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1)외부차량 3일 이상, 입주사 차량으로서 15일 이상 무단 방치할 때에는 3일 이상의 최고기간을 정하여 이동조치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지원본부는 제1항의 조치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위반차량의 소유주 또는 사용자에게 당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 2006. 09. 01)

제10조 (주차, 출차의 제한)

다음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 또는 출차를 제한한다.

- 1)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타 차량을 훼손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 2) 차량에 인화물, 폭발물을 적재 하였을 때
- 3) 주차장이 만차 인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증을 제시 하지 않거나 주차 시간에 해당되는 소정의 주차요금을 납부 하지 않을 때
- 5) 주차장내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때
- 6)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을 체납이 있는 경우 (개정 : 2014년 11월 17일)

제11조(사고의 신고 의무)

주차장내에서 차량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나 주차장의 시설, 차량 등의 훼손피해가 생겼을 경우 가해자 또는 목격자는 관리주체에게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당 주차장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명 피해를 입혔거나 주차장의 시설, 차량 등의 훼손 피해가 생겼을 경우 가해자는 그 피해를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면책사항)

관리주체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그 적재물 또는 부착물 등에 대하여 도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당 단지는 원칙이 무료주차장으로 차량 간 접촉사고 및 뺑소니사고 등 차량 당사자 간의 사고와 제3자에 의한 차량 손괴, 운전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차량의 흠집 등에 일체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다만, 단지에 설치된 CCTV로 사고 확인에 대하여 CCTV확인요청서를 제출할 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 단지의 관리규약에 의한다.

- . 재정 : 2001년 08월 01일 . 시행 : 2001년 09월 01일
- . 개정 : 2006년 03월 01일 . 시행 : 2006년 03월 01일
- . 개정 : 2006년 08월 16일 . 시행 : 2006년 09월 01일
- . 개정 : 2012년 03월 12일 . 시행 : 2012년 03월 15일
- . 개정 : 2014년 11월 10일 . 시행 : 2014년 11월 17일